

제 210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·
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**



2017. 9. 14.

**기획행정위원회
전문위원**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·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53
----------	------

2017.9.1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7.5.11.
- 나. 회부일자 : 2017.9.1.
- 다. 상정일자 : 2017.9.7.

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고재식 행정국장

나. 개정이유

「청소년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청소년 보호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 변경 (안 제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보호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2017. 3. 17. ~ 4. 6.(결과 : 의견 없음)

3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정수용)

- 본 개정조례(안)은 2017년 5월 11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.
- 본 조례(안)은 「청소년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조례(안)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(목적)에서 “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”으로 수정함.
- 종합 검토의견
 - 본 개정조례(안)은 상위법(청소년보호법)에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건으로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